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0. 10.

환 경 부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, 같은 법 시행규칙에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인용 조문이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건설기계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근거 추가 및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. 0. 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 중 “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7조”를 “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7조 또는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”로,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신청해야”로 한다.

제87조제2항 중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제1항”을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제1항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7조제3항 중 “기록하여야”를 “기록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)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<u>신청하여야</u> 한다.	제86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) ----- ----- ----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7조 또는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----- <u>신청해야</u> ----.
제87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) ① (생 략) ②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(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)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(이하 “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”라 한다)로 한다.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<u>기록하여야</u> 한다. ④ (생 략)	제87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제1항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4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----- ----- ----- <u>기록해야</u> 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교통환경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928